##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(이학영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9611

발의연월일: 2025. 4. 7.

발 의 자:이학영·김영배·전재수

박민규 • 박해철 • 신영대

김성환 · 한민수 · 박정현

김기표 의원(10인)

##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「산업안전보건법」에 따르면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에 대하여 근로자의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도록 휴식시 간에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음.

이러한 휴게시설의 경우 많은 근로자들의 휴식공간으로 사용되고 있음에도 휴게시설과 그 주변 구역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지 않고 있 어 비흡연근로자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음.

이에 「산업안전보건법」에 따른 휴게시설 및 그 주변 10미터 이내의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려는 것임(안 제9조제4항제26호 및 제6항제4호 신설).

법률 제 호

##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

국민건강증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9조제4항제26호를 제27호로 하고, 같은 항에 제2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조 제6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26. 「산업안전보건법」 제128조의2에 따른 휴게시설
- 4. 「산업안전보건법」 제128조의2에 따른 휴게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10미터 이내의 구역

### 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 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9조(금연을 위한 조치) ① ~ ③	제9조(금연을 위한 조치) ① ~ ③
(생 략)	(현행과 같음)
④ 다음 각 호의 공중이 이용	4
하는 시설의 소유자・점유자	
또는 관리자는 해당 시설의 전	
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	
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를 설	
치하여야 한다. 이 경우 흡연자	
를 위한 흡연실을 설치할 수	
있으며,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	
지와 흡연실을 설치하는 기준	
• 방법 등은 보건복지부령으로	
정한다.	
1. ~ 25. (생 략)	1. ~ 25. (현행과 같음)
<u>&lt;신 설&gt;</u>	<u>26. 「산업안전보건법」 제128</u>
	조의2에 따른 휴게시설
<u>26.</u> (생 략)	<u>27.</u> (현행 제26호와 같음)
⑤ (생략)	⑤ (현행과 같음)
⑥ 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	6
지사・시장・군수・구청장은	
흡연으로 인한 피해 방지와 주	
민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다음	
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를 금연	

구역으로 지정하고,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안내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. 이 경우 금연구역안내표지 설치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렁으로정한다.

1. ~ 3. (생 략) <u><신 설></u>

⑦ ~ ⑨ (생 략)


- 1. ~ 3. (현행과 같음)
- 4. 「산업안전보건법」 제128조의2에 따른 휴게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10미터 이내의 구역
- ⑦ ~ ⑨ (현행과 같음)